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28049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 고 1. B

2.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1,533,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4,075,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C가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였다). 피고 B는 C의 사내이사로서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C와 원고 사이의 전자상거래계약에 기하여 C가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2.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왔고, C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D로부터 임차했던 안양시 E에 있는 F~G호 소재 상가를 2017. 5. 1. C에게 전대하였고, 동시에 원고가 소유하던 전시품, 비품 등을 모두 C에게 양도하였다.

다. C는 2019. 2. 28. 폐업하였고, 원고와 C는 2019. 4. 22. 상호간의 채권 및 채무를 정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갑 제8호증 합의서).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9. 2. 28.자 기준 123,021,256원
2.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19. 2. 28.자 기준 78,945,897원
3. 원고와 C는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되, ① 전대료, ② 기타매출, ③ H자산 양도금, ④ 영업매출 순으로 상계하며, 그 결과 C의 미지급채무는 44,075,359원 (2018. 12월 영업매출잔액 32,483,438원 + 2019. 1월 영업매출잔액 11,591,921원).
4. 위 44,075,359원 중 10,075,359원은 합의 후 10영업일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34,000,000원은 2019. 4. 15.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매월 6,8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

5. C가 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담보보증을 실행하여 미

지급채무를 충당하고, C는 이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6. C가 원고와 별도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료 중 2019. 2월분 및 3월분의

50%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라. 원고는 C와의 합의에 따른 영업매출 미수금 44,075,359원 및 이후 발생한 전대료, 기타매출 등

미수금 7,457,694원을 합한 51,533,053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서, C의 채무

51,533,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물품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44,075,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무 44,075,336원이 물품대금 채무가 아니어서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C가 정산을 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의 채무를 먼저 상계로 소멸시켜 위 물품대금 채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